

###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 되었습니다. 그동안 찬반 양쪽의 주장이 열거를 띠었으나 이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현명하고 앞서가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가 민주주의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좋게 생각한다면 결정이 나면 승복할 줄 아는 것도 민주주의의 표본입니다.

'나'의 주장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주장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의 과거는 지우고 화합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인데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별다른 조치를 안하다가 대한민국



**권태정**  
(본보 자문위원, 서울 문화사상임 감사, 전 뉴욕 중앙일보사 사장, 검교공파33세)

개워 줍니다. 이런데도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지리멸렬해서야 되겠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늘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달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서 씁니다. 좀 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제부터 과거의 내 탓, 네 탓을 그만두고 미래를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다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권문일족부터 솔선수범하면 어떨까요?

미국과 함께 강대국의 리더쉽을 경쟁하는 나라가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스스로 강한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

### 윤달(閏月)에 대한 소고(小考)

일반적으로 묘소를 명당길지에 썼다고 인정되는 사례 총 800여기의 사진을 가지고 본인이 신기법(관세음보살신통력+탐기법)으로 감평해보니 터의 등급지수가 130이상인 특지급(特大地級)이 2.4%였고, 100~120인 대지급(大地級)이 67.1%였으며, 90~100인 중지급(中地級)이 5.4%였고, 70미만의 흉지(凶地)가 25.1%였는데, 흉지 중 약 20%에서 수맥파가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 약 5%는 다른 이유로 등급지수가 떨어지고 있었다.

이를 감안해볼 때 대지급(大地級)보다는 소지급(小地級)이 많은 일반적인 묘소는 터의 등급지수가 시제 중에 비해서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흉지가 곱절 이상은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묘소가 점혈(點穴)이 잘못되어 수맥파가 올라오거나 다른 이유로 등급지수가 7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집안에 산화(山禍)가 일어나고 제사 때 혼신(魂神)이 강신(降神)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헛 제사를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권흥**  
(추밀공파 36세, 神氣風水地理研究家)

야 한다. 5년에 두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 올해에는 음력 5월에 닿는다. 윤달에는 월건(月建)이 없기 때문에 살(殺)이 없다고 하여 조상묘소를 함부로 이장(移葬)하거나 수묘(修整)하는 달로 알고 있으나 윤달에도 일진(日辰)은 있는 법이고, 음택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살(神殺)을 볼 때에는 주로 연간지(年干支)와 일간지(日干支)만을 쓰게 되고 월간지(月干支)를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윤달이라고 하여 아무 날이나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상에 효도하여 복을 받고 싶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조상묘소를 이장, 수묘 또는 화장하기 위하여 윤달이 오기를 고대한다면 먼저 조상 묘소에 용상팔살(龍上八殺), 대악살인 환천살(大惡殺人黃泉殺), 쌍금살(雙金殺) 같은 악살을 범하지는 아니했는지, 살인환천살에 버금가는 수맥파가 올라오는 흉지는 아닌지, 묘소관리가 어렵다보니 명당길지 무덤을 파서 화장하려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본 연후에 윤달이 아니더라도 날을 가려 시행할 일이다. 묘소에서 수맥파가 올라오면 터의 등급지수가 30으로 떨어지는데, 이를 물리적으로 수맥파를 방지하면 등급지수가 90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고 명당길지에 묘소를 썼다고 하더라도 생기(生氣)를 타지 못하면 발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감복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야 한다. 5년에 두 번씩 돌아오는 윤달이 올해에는 음력 5월에 닿는다. 윤달에는 월건(月建)이 없기 때문에 살(殺)이 없다고 하여 조상묘소를 함부로 이장(移葬)하거나 수묘(修整)하는 달로 알고 있으나 윤달에도 일진(日辰)은 있는 법이고, 음택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살(神殺)을 볼 때에는 주로 연간지(年干支)와 일간지(日干支)만을 쓰게 되고 월간지(月干支)를 쓰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윤달이라고 하여 아무 날이나 하는

### 이달의 시

### 어려 경험



**시인 권장섭**  
(북아공파 36세, 장수혈장(주)회장)

파도 같은 흥분이 자리함은 넘쳐나는 순간의 일들이었다. 그리고 함께했을 당시의 것들을 돌아보는 중이었다.

시간이, 바람이 그랬고 또 추억이 그러했다.

작은 촛불이 솟을 곳 같은 곳에 걸터앉아 점점 줄어드는 키 높이를 내 주고는 다시 주섬주섬 주위 담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고 내려앉을 듯한 눈을 비껴가며 알 수 없는 형상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점점 단단해지는 고뇌가 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삶이 알팍해지는 순간을 그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모습의 긴 여운을 기억하기 위함으로 오랜시간 그런 현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社告

### <안동권씨능동문인회> 창립 계획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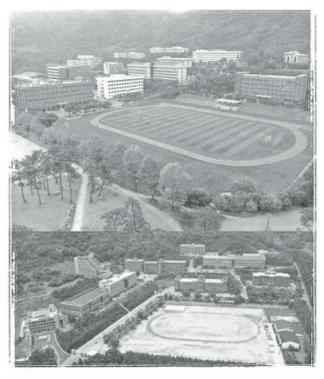
목적: 권문의 전통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문학적인 자료로 보존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재능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규모는 1차로 한국문인회 산하 회원중 죽친을 위주로 하여 구성합니다. 창립총회는 대중원 사업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가자격 및 조건은 한국문인회 회원 죽친님들과 관심있는 분들과 이후 시행세칙이 마련되면 그에 따르고자 합니다. 본회는 순수문학 및 기록문화, 저널리즘을 망라하는 것으로 하고, 각 장르별, 지역별, 특성별 소모임도 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andongkwonmun@daum.net, ankwon2695@naver.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기획

### 權氏烈傳 ⑩

### 民松 權寧禹

(지난호에 이어) 교육사업에 뜻을 가진 나는 1970년대부터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가까운 측근들에게 이 뜻을 내비치면 모두들 태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 조그마한 운수회사를 하면서 막대한 자본과 시설이 필요한 대학을 하겠다고 했으니 당시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법도 했다. 그러나 나는 끝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갖고 1980년대 초반부터 다각도로 대학을 설립하기위한 노력을 한지 10년을 투자했고, 처음에는 고향인 안동을 생각했으나 이미 대학이 자리잡고 있어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균형발전도 할 수 있는 적지로서 산청고 물 맑은 제천을 선택했다. 제천은 내륙의 중요도시로서 인근에 광산과 시멘트 산업이 발달된 도시이며 약초산업의 중심지로서 철도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지역내에 마땅한 대학이 없었다. 이 무렵 노태우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제천지역에 대학을 유치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노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제천의 대학유치의 공약이 탄력을 얻게 되었다. 제천은 인근 단양팔경으로 유명하나 해발이 높아 여름에도 30도를 넘는 법이 없을 정도로 추운 지역으로 도로포장율이 저조한 열악한 환경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설대학들이 다들 그랬듯 건설초기의 공사현장은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도로도 없는 그야말로 난관의 연속이었으며 개교준비위원들은 물론이고 당시 외부에서 내



세명대학교 전경.

려운 방문객들조차 마땅히 식사할 곳도 없어 공사장의 합바식당에서 끼니를 때우며 교통편도 제대로 없는 제천시내로 출퇴근 해야했다. 당시 개교 준비위원들은 모두 다른지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로지 나만 밟고 내려와 신명을 바쳐 일을 도와 주었다. 학교건물은 백년대계로서 볼 때 신중히 지어야 하는 것으로서 전국대학의 여러 모범사례들을 직접 답사하여 참관점을 벤치마킹하여 정성을 다해 지어갔다. 한번은 건물을 짓는데 담당건축공수가 말하길, "이사장님, 철근은 기둥에 열세가 단칸 넣어도 안전하며 이정도만 넣어서도 몇백년은 갑니다." 하지만 나는 답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용도가 후에 도서관 등으로 변경될 경우 책의 무게나 시설기자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비용과 사고위험의 문제가 추가발생하게 된다. "더 튼튼하게 지으세요." "이사장님 과



당신께입니다." 건축을 잘 아는 교수들은 나를 만류했지만, 내 생각은 변함 없었다. "내가 지시한대로 하세요, 최고로 튼튼하게, 아름답게 지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 노동법해설 |

### 법정 기준임금의 종류

- 1. 의의**  
개별 근로관계법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법정기준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과 보상금 산정은 이 두가지 중 하나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통상임금 적용 대상**: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 2.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계산방식**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 적 물가상승에 대비한 인플레이션수당 등이며, 일·속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둘째,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는 현물급여(급식) 등이 있다.
- 4. 평균임금 산정기간**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기간이 되는 3개월 동안은 9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역월상 3개월(89-92일) 동안에 포함된 일수가 된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① 수습사용중인 기간(3개월 한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 ③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④ 적법한 쟁의기간, ⑤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 등이다.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수습기간(예 2개월)이 포함될 경우 수습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 5.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종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으로 판단하나, 지급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통상임금의 구성요소로는 첫째, 정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기성이라 함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에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개월, 2개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둘째,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률성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족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



**권오일**(북아공파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에 포함된다. 셋째,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팀장수당, 벽지수당, 자취수당 등이 될 수 있다. **6. 통상임금 환산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시간급으로 하는 이유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첫째, 임금형태가 일급인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법정 기준근로시간**: 일반근로자 1일 8시간,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유해·위험직업근로자 1일 6시간  
둘째, 주급의 경우 주급금액은 정해진 임금을 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일 8시간을 합산한 48시간이 된다. 셋째, 월급의 경우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일반근로자로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18세미만 연소근로자는 204시간, 유해·위험직업장 근로자는 174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수가 된다. **※ 계산방식** (40시간+8시간)×365일/7일÷12월=209  
넷째, 도급임금으로 정해진 임금이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된다. 다음달에는 임금결정 원리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